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8일, 최기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2025.11.12.)

상정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2025.11.18.)

상정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2025.11.24.)

상정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2025.11.30.)

상정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6.3.16.)

상정, 심사, 의결(수정)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3.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최기상의원)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최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의 중복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이 도과된 점을 감안하여 공포 후 시행하도록 수정의 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17.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이 도과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제1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2026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2026년 1</u> <u>월 1일</u>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u>공포한</u> <u>날</u>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u>8세 이상</u> 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 ----- ----- ----- ----- ----- <u>13세 이상</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